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18
----------	-------

발의연월일 : 2024. 1. 18.

발 의 자 : 송석준 · 안철수 · 박덕흠
조경태 · 전주혜 · 윤창현
윤상현 · 성일종 · 서정숙
김형동 · 최춘식 · 태영호
권영세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면제하지 않음.

그러나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잠정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국가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3명 이상의 자녀와 상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저

출생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분에 한함)도 면제함(안 제22조의2).

나.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서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녀들과 상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분에 한함)하고, 총 감면액은 100만원 이하로 함. 다만,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6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를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된 자동차세에 한한다)를 각각 감면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 “취득세 및 자동차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자녀가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으로 본다.

제3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6(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재산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녀들과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상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한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1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양육자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u>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 ----- ----- ----- ----- ----- ----- ----- ----- <u>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u>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u>취득세와 자동차세(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된 자동차세에 한한다)</u> 를 각각 감면하 <u>되,</u> ----- ----- ----- -----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취득세와 자
동차세를-----.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취득세 및 자동차세
-----.

1. ~ 4. (현행과 같음)

⑤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정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자녀가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
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으로 본다.

제36조의6(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재산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녀들과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상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한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1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